

초고속 인터넷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개요)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주)서경방송(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서경방송 인터넷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자의 가입 일부터 채권, 채무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규정합니다.
- ③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지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공지 및 준칙)

- ① 본 약관의 공지 및 변경사항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iscs.c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2. 이용신청 :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
 3. 이용고객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4. 납입자 : 이용계약에 따라 회사의 이용요금 청구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책임을 지는 자
 5. 이용ID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인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비밀번호 : 이용 ID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7. 해지 :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8. 직권해지 : 회사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일정한 요건에 의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9. 이용정지 :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10. 이용중지 :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것
 11. 일시정지 :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 이용계약을 보류하는 것
 12. 동적 IP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만 회사로부터 자동으로 할당받는 IP
 13. 장치임대 : 회사의 소유 장치를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
 14. 접속회선 : 회사의 통신망과 이용자 단말기기 간에 연결되어 이용하는 회선
 15. 단말기기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
 16.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7.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2024년 1월

(주) 서 경 방 송

목적의 광고성 정보

18. 결합상품 : 방송서비스(아날로그, 디지털)와 인터넷(모뎀, VDSL, 광랜 등)서비스가 함께 묶인 상품
② 전항에서 정한 용어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법령 및 상관행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승낙으로 성립됩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개통)

서비스 개통일은 계약체결 후 장비 설치일 또는 서비스 이용개시일로 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종류)

- ① 이용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PC통신 및 PC장비 등의 타사 서비스 및 단말기기 등과 제휴된 통합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공지합니다.
③ 제 2항의 PC장비제휴 통합서비스의 경우 사전 사용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동 서비스의 해지시는 해지 위약금을 회사가 고객에게 청구하고 고객은 이를 지정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지 위약금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8 조 (이용신청)

- ①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은 회사가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별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신청 고객은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대리 신청의 경우는 고객 본인의 위임장 등 고객 본인 가입 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 하여 제출하는 것을 신청 완료로 봅니다.
② 이용신청 고객은 반드시 자신의 본명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신청 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정치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 기간을 1년, 2년, 3년, 4년 약정하는 정기이용계약 (이하 “정기계약”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용신청의 승낙)

- ① 회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신청 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이용자에게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교부 합니다.
1. 고객 기본 정보
2. 요금 납부 정보
3. 신청 상품 정보
4. 판매자 정보
5. 설치 작업 정보

6.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7. 고객 및 회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③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후, 서비스 개통 전·후 개별약정 내용 (이용료, 약정장치사용료, 중도 해지시 할인반환금 등 위약금 산정기준, 변상금, 특약사항 등)이 포함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제 10 조 (이용신청의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사에 서비스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체납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타 전기통신사업자 요금을 미납 또는 연체하고 있는 경우
4. 요금납입책임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7.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8.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9.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접수가 곤란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이용승낙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회사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회사는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즉시 통보 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시설 설치 이전에는 언제든지 이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납입 된 시설 설치비와 셋톱박스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제 11 조 (장비의 임대)

- ① 장비임대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장비임대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와 장비임대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의 경우 장비 임대가 등 세부내용은 [별표 4]와 같습니다.
② 회사에서 정한 장비의 임대기간은 이용자와의 약정기간에 따르며 계약 만료 7일전 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을시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③ 서비스 이용을 해지 또는 임대 장비의 자체 구매(모뎀규격 등은 홈페이지 공시) 등으로 임대 장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종료일 이후 회사가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임대장비 약정 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이에 따른 약정 할인반환금 및 손망실 시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모뎀 등 임대장비의 불량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불가능한 경우 동 장비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제 12 조 (장비의 설치 및 점검)

- ① 임대 및 판매한 장비는 이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회사가 설치하며, 설치장소를 변경시 이용자는 변경 7일 전에 회사에 통보한 후 회사는 전기통신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합니다. 장소 변경에 따른 이전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②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의 설비가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장비 등에 대하여는 제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④ 임대 이용자는 임대장비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⑤ 임대 이용자는 회사에서 임대한 장비 및 단말기기 등에 낙뢰나 과전압 등의 손상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단말기기 등의 유지보수)

- ① 이용자는 이용자 측의 구내통신선으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장비 및 단말기기 등이 관계 법령에 정하는 기술수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유지보수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PC환경이 Windows 계열 이외인 이용자가 이용신청 할 경우 케이블모뎀 하단에 연결되는 컴퓨터에는 설치지원 및 A/S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4 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이용중지)

- 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다음과 같이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
 2. 국내·외 전용회선의 장애 등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회사와 이용자가 합의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5 조 (서비스 이용정지)

-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②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도 복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의 서비스 이용정지를 통지받은 이용자는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비스를 재개통 또는 이용정지를 해제합니다.

⑤ 자유게시판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게시판을 개설 및 운영하는 이용자와 해당 게시판의 회원인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각종 법규위반 및 금지 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은 관련된 이용자들에게 있습니다.

⑥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의 대역폭, 데이터 저장용량, DNS 그리고 기타 제약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이용자의 일상적인 서비스 사용을 부적절하게 규제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이용행위는 금지되며, 회사는 금지된 서비스의 이용행위를 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정지 시에는 서비스 이용료를 면제하며, 장비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1. 이용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 납기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와 체결한 별도의 계약,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규, 시행령 등을 위반하여 회사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 한 경우
3. 타인의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가공의 내용인 경우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5.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1) 불법 강제 조직, 기구를 위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 2) 어떤 사람 또는 실제물을 흉내낸 사기 행위를 한 경우
 - 3) 다른 사람의 전자서명 또는 직접 서명을 위조한 행위를 한 경우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8.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저작권자)가 지적재산권(저작권자)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이용자가 서비스를 별도의 이용계약 없이 재판매하거나 변형하여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10.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회사의 문서화된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재판매, 공유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배포하는 행위
11.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고객의 개인적인 이용 이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 저작 등을 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는 경우
12. 서비스용 컴퓨터에 입력되어있는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정하거나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3. 회사의 승인 없이 IP 주소를 고정 설정하여 이용하는 행위
14. 허가된 IP 주소 이외의 IP 주소를 이용하는 행위
 - 1) 전화접속을 통한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2) 인터넷상의 Host Shell Accounts를 제공하는 행위
 - 3) 전자우편을 서비스하는 행위
 - 4) 뉴스그룹을 서비스하는 행위

5) 그 외의 서비스도 포함될 수 있음

15. 회사의 승인 없이 이용자의 케이블모뎀 하단에 HTTP, SMTP, NNTP, FTP, 게임 등의 서버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케이블모뎀 상단에 위치하는 제3자에게 서비스를 하는 행위
16. 케이블모뎀 하단에 이용자 고유의 Primary 및 Secondary DNS를 운영하는 행위
17. 케이블모뎀 하단에 회사와 계약된 수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행위
18. 네트워크 보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 1) "Denial of Service" 공격
 - 2) 이용자 인증 위반
 - 3) 허가되지 않은 시스템 및 네트워크로의 접근
 - 4) 사전 인증 및 허가 없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찾거나 시험해 보기 위한 행위
 - 5)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주어진 권한 횡득 및 사용
 - 6) 사전 인증 및 허가 없이 회사의 네트워크나 시스템에 입/출력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
 - 7) 호스트 컴퓨터를 파괴(Crash)하려는 행위 및 브로드캐스트(Broadcast) 공격으로 네트워크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
 - 8) TCP/IP 패킷의 헤더를 변조하는 행위
 - 9) 회사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행위
 - 10) 암호 추적 프로그램, 크래킹 툴(Cracking Tool), 패킷 분석기(Packet Sniffer) 또는 네트워크 탐색 툴(Network Probing Tool)등 보안에 위배되는 툴을 사용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행위
19. 회사의 승인없이 이용자의 케이블모뎀 하단에 이용자 고유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어, 해당고객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IP공유기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계약한 대수 이상의 PC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
 - 2) 회사는 해당고객에게 연락 후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고객이 연락불가인 경우 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의 원상회복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IP공유기 등의 고유의 서브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부당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부과금액 : 계약 이외의 PC대수 * 최근 3개월 평균 이용료 * 3

- ▶ 계약 이외의 PC대수 : 회사의 현장조사 결과 후 밝혀진 계약 외의 사용 PC대수 또는 기술적으로 검증한 PC사용대수 현황
 - ▶ 고객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기간 평균요금 적용
- ⑦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웹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4.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등
- ⑧ 이용자는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⑨ 회사는 제15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해 이용제한을 받은 이용고객의 아이디(ID),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제한 사유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량이용자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다른 PC통신 · 인터넷사업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습니다.

제 4 장 이용계약의 변경 · 일시정지 · 해지

제 16 조 (계약사항의 변경)

- ① 이용자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및 회사가 정한 별도의 변경신청서(해당서류 첨부)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종류의 변경 시는 그 변경시점부터 신규로 인정됩니다.
 1. 명의 변경
 2. 우편물 수령지 및 전화번호 변경
 3. 비밀번호의 변경
 4.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방법의 변경
 5. 장비 및 단말기기 임대계약의 변경
 6. 서비스 종류의 변경
 7. 서비스 선택사항 추가 및 취소로 인한 변경
 8. 설치장소의 변경
 9. 사업자등록증의 내용 변경 (해당 증명서류 첨부)
 10. 감면 및 할인 대상 자격의 변경 (해당 증명서류 첨부)
 1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 (관계법령을 첨부한 서류)
- ② 이용자의 부주의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 약정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단기간 약정에서 장기간 이용으로 변경하는 것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구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결합상품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고 잔여 서비스를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사업자는 해지 전 결합상품 할인율을 계속해서 나머지 서비스에 제공합니다.
 - 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결합상품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고 잔여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결합 상품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최적의 결합상품을 제공하고 변경된 결합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잔여서비스의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이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제 17 조 (이용자의 지위승계)

-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자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에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 변경사항
 2. 요금청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청구지 주소
 3. 요금납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자 정보
- ② 이용자의 지위승계 시 미납된 이용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자 및 지위 승계자에게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이용자가 케이블모뎀을 임대한 경우 임대약정서에 대한 모든 사항은 자동으로 지위승계 됩니다.
- ③ 자유게시판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지위 승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용자 간에 지위 승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④ 타 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 타사업자로부터 이용자를 인수시 요금체계(요금, 약정 등)는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 ① 이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기본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정지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IP 서비스의 경우 1년 동안의 일시정지 총일수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2IP 이상 서비스의 경우는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수사무용(숙박업소) 서비스의 경우 일시정지는 불가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이용자가 일시정지인 기본서비스를 재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우편, 방문, 팩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재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정지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장비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위약금 산정시 일시정지기간은 이용료는 무료이므로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모뎀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하므로 약정기간에 포함됩니다.
- ⑤ 회사는 일시정지 및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19 조 (계약의 갱신)

회사는 정기계약기간 만료시점 30일전 가입자에게 해지 또는 재계약사항을 통보하고, 가입자 동의후 계약을 연장하며, 가입자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신청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단위로 자동연장 됩니다. 단, 가입자 동의없이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최초계약 기간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자동연장 기간중 해지시 할인반환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20 조 (해지 및 재가입)

- ①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전화, 방문, 회사 홈페이지, E-Mail, FAX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희망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은 해지 희망일 전까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인감증명, 명의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즉시 또는 해지 희망일까지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지통고 접수후 7일 이내에 해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희망일 이후에 해지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해지희망일에 해지된 것으로 하여 이용료를 정산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부당하게 요금을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일 경과일수에 따라 부당수령액과 부당수령액에 대한 법정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 ③ 회사는 ①항, ②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해지희망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지처리를 합니다. 이용고객은 해지시점까지 사용한 요금 및 체납된 요금, 임대장비 미반납과 관계없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요금완납 이전에 해지처리를 했더라도 이용고객은 미납요금에 대한 납부의 의무를 지며, 할인액반환금 면제 구비서류 등은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지분쟁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지분쟁 다음날 곧바로 과금을 중단하고, 해지희망일이 불분명하고 최초 해지신청일만 입증이 가능한 경우 이날을 기준으로 과금을 중단하여 이후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해지신청 접수 시, 해지처리 완료시에 각각 문자메시지, E-mail,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 ⑤ 계약의 종도해지 시 위약금이 있으며 적용방법은 [별표 8]과 같습니다.
- 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약금 (정기계약할인, 장비임대료 포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누적시간 24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 2. 초고속인터넷 최저속도 보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월 5회이상 발생하여 해지하는 경우
-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이 월 5회이상 발생한 경우
- 4.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주민등록등본-변경주소 기재된), 주민등록증(변경주소 기재된) 사본, 전입신고서 중 1개 서류)단, 이민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본인사망 및 군 입대로 인하여 약정기간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군입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사망확인서 중 1통)
- 6. 사업자가 결합상품과 관련된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음을 확인하는 별도의 확인란에 서명(또는 녹취)을 받지 않은 경우(2010년 1월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결합할인에 대한 할인액 반환금 지불 의무
- 7.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 8.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요금승인을 받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경우9.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단, 위 제6항의 4,5에 해당될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면제 적용합니다.

-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용정지 기간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 2.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3.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이 허위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 4. 이용자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압류, 가압류 등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5.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 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6.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 7.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⑧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7일전까지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사유 통보시 고객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⑨ 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직권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⑪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차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정지된 이용자가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방송통신 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 3.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 4.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⑫ 계약해지 시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직접 이용자 댁내를 방문하여 관련장비 (모뎀 등)를 수거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방문시간 불이행, 부재 등의 경우 상호협의하여 처리키로 합니다.

단, 장비회수기간은 해지일 또는 이용자와 협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기간이 경과하여 장비 분실 및 훼손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내부재 등 이용자 측의 사정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⑬ 사업자 귀책사유로 결합상품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 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단말기등의 물품을 반환할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며, 반환이후 시점의 단말기(VOCM, MTAWIFI, DECT, 모뎀, 셋탑, 컨버터등) 할부금,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청구 할 수 없습니다.

⑭ 이용자는 해지신청 후 재가입을 할 수 있으며, 그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뎀이 미회수 상태인 경우, 기존 약정 및 계약상태, 할인혜택 등이 유지 가능합니다.
2. 모뎀이 회수완료된 상태인 경우, 신규가입 처리하며, 이용자의 기존 계약상태(약정 및 기타할인, 감면, 무료혜택 등)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약정만료 이후 재가입의 경우는 기존 계약상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⑮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 반환금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별표 8]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 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단, '22년 4월 이후 설치 요청에 대한 반대 사유가 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할인반환금의 100%를 감면)
2. 해외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3. 이전 설치를 요청한 건물이나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단, '22년 4월 이후 이전 설치를 요청한 경우는 할인반환금의 100%를 감면)

제 5 장 요금 등

제 21 조 (요금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요금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 ① 가입 설치비 :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자의 단말기기 및 회사의 장비를 설치하는 제반 비용.
단,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설치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전 설치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입자 선로를 설치 또는 설치장소 변경 시 납입하는 요금
- ③ 재가입비 : 해지 후 서비스 재가입 시 부과되는 요금
- ④ 기본 서비스 이용료 : 기본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이용요금
- ⑤ 부가 서비스 이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이용요금으로 이용 시간 등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⑥ 추가 이용료 : 서비스의 선택사항 추가에 따라 부과되는 이용요금
- ⑦ 장비 사용료 : 회사로부터 장비임대 시 매월 납입하는 요금
- ⑧ 장비 판매료 : 이용자에게 단말기 판매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 ⑨ 임대 보증금 : 회사로부터 장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으로 해지 시 전액 환불
- ⑩ 개통 보증금 : 외국인의 개통 시 예치하는 금액으로 해지 시 전액 환불

제 22 조 (요금의 계산구분)

- ① 요금 등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선납, 일액, 월액으로 구분하여 납입 할 수 있습니다.
- ② 일액요금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는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간 또는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합니다.

③ 월액요금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당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당해 이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이하 "일할계산" 이라 합니다)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개통일,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④ 이용요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월액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액의 일할로 합니다.
- ⑤ 서비스에 관한 월정액 요금 등이 요금 월의 중도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요금 월의 그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정액의 일할로서 산정합니다.
- ⑥ 회사는 기존 고객이 서비스 지역내에서 신규 고객을 유치한 경우 해당 기존 고객에게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에서 별도로 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3 조 (요금 납입자)

- ① 요금납입자는 신청시 등록된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미성년자 등 회사가 인정한 경우 제3자를 요금납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자는 이용자가 회사에 납부해야 할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요금납입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요금납입자는 변경 전의 요금납입자가 납입하여야 할 미납 요금에 대해서도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4 조 (요금의 납입청구)

-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 전까지 요금납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단, 이용자가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자동납부 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요금에 따라 월별 합산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 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④ 이용자는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 신상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통보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⑤ 이용고객이 납입청구서를 온라인상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납입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⑥ 사업자는 결합상품에 대한 전체 할인액과 개별 서비스별 할인액, 기타 할인액(약정 할인 등)을 구별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이용요금을 청구합니다.

제 25 조 (요금의 납입방법)

- ①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시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납입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변경 신청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방식에 의거하여 청구하며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납입방법이 지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2.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3. 지로에 의한 방법
 4. 현금에 의한 방법 등

- ② 회사는 납입방법에 따라 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대신 사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이메일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 ③ 요금 등의 납입기일은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합니다.
- ④ 외국인의 경우 요금의 납입방법은 신용카드 또는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제한합니다.
- ⑤ 회사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납입방법으로서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한 경우 회사는 각 카드사에 매월 25일경 승인의뢰를 하여 승인결과에 따라 출금을 하며, 고객은 고객이 결제 신청한 신용카드의 결제일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미승인 되는 경우 회사는 재승인 및 출금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요금납입의 특례)

회사는 요금납입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지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 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요금의 이의신청)

- ① 납입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입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 28 조 (부당이익 및 부당할인 / 감면요금의 청구)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면탈요금과 이용자가 취득한 부당한 이익에 대하여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단말기기 등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기기 등을 연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2. 이용자가 회사와의 사전 협의없이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및 매개하여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3. [별표 6]에서 정한 할인, 감면 대상이 아닌 자가 요금 등을 할인, 감면받은 경우
- ② 약관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면탈한 경우 면탈요금의 2배, 서비스의 부당한 사용으로 이익을 취한 경우 그 이익금의 3배를 청구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의 면탈요금 및 부당한 이익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 29 조 (가산금의 부과)

- ① 유료 정보 및 부가서비스 이용요금과 장비사용료 등(부당요금 포함)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요금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 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요금 미수발생 3개월이 경과된 이용자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정보통신요금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체납요금의 독촉)

- ①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자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최고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료를 2개월이상 납입하지 않는 미수고객에 대하여 접속회선을 절단할 수 있으며, 접속 회선을 절단한 이유가 해소되어 복구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1 조 (요금의 할인)

- ① 회사는 정한 바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할인대상, 할인율 등을 [별표 5]와 같습니다.
- ③ 할인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할인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접수한 시점의 익월부터 할인을 적용합니다.
- ④ 요금할인 대상자는 요금 할인대상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로 이사하여 이전 회사 서비스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한 경우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에 이를 때까지 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습니다.
- ⑥ 회사는 전항에 따라 요금할인 중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발생한 할인반환금과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 간 상계처리하고 이전 사업자에게 납부한 할인반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32 조 (요금의 감면)

- ① 회사는 기본서비스 등 이용계약시 이용요금중 기본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방법은 [별표 8]과 같습니다.
- ②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회사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감면을 적용합니다.
- ③ 요금감면대상자는 요금감면대상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④ 감면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감면액을 환수합니다.
- ⑤ 회사는 타사업자의 부도나 파산으로 인하여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여 당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로 전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비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비제공지역 이전 등 당사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후 2년이내 재가입할 경우 및 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하는 등의 경우 설치비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는 이용자의 정기계약이 회사수익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1년이상 장기계약 이용자에게는 [별표 5] 장기계약 이용료 감면 표의 기준에 따라 기본 이용료를 면제합니다. 모뎀사용료는 제외합니다.

제 33 조 (요금의 반환)

- ①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로 이용고객과 합의한 적정한 이자를 반환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 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합니다.
-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반환요금 등이 발생할 경우 요금납입 책임자에게만 반환합니다.
- ④ 회사가 과소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 34 조 (정보이용료 회수대행)

- ① 회사는 정보제공자가 원활 경우에는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이용고객에게 정보이용료를 과금, 청구, 수납한 후 정보제공자에게 지급(이하 "회수대행"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 ②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이용료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와 이용 고객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정보제공자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6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35 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합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채권추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요금을 체납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자유게시판 서비스의 경우 게시판을 개설한 이용자의 신상 정보는 회사와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 해당 게시판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에게 신뢰성을 위하여 공개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자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에 관련된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⑦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 ⑧ 회사는 이용 신청한 고객에게 개통예정일을 공지 후 개통지연이 예상될 경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 ⑨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해야 합니다.
- ⑩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장애신고를 접수한 뒤 1시간 이내에 담당자가 고객에게 연락하여 방문 일정 등을 협의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의 방문시간 불이행, 부재 등의 사유발생시 방문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⑪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려하지 않습니다.

- ⑫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정책 '개인정보보호지침 (2000.06.01 시행)'의 규정에 따릅니다.
- ⑬ 회사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서비스 제한 조치에 대해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⑭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⑮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 김영빈 (055-740-3227)

- ⑯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 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⑰ 사업자는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명시적 등의 없이 이용중인 결합상품에 다른 개별 서비스 상품을 추가하는 행위로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⑱ 사업자는 결합상품 관련 분쟁 발생시, 계열사간 또는 관련 사업자간 책임 전가를 막기 위해 이용약관 및 계약서에 결합상품의 책임소재를 명시해야하며,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⑲ 사업자는 이용 설비의 설치, 변경, 유지 또는 보수 등의 업무 수행 중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 ⑳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회수하여 재출고하는 단말의 경우 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신품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 적합 검사를 이행 후 임대 제공합니다.

제 36 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타인의 이용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4.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 ⑤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⑥ 이용자는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영업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⑦ 이용자는 회사의 승인없이 계약된 IP보다 많은 수의 PC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승인없이 IP주소를 고정 설정하여 서버를 운용하거나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회사의 문서화된 승인없이 제3자에게 재판매, 공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 이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회사는 강제해지를 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⑧ 이용자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⑨ 이용 고객은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 ⑩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문제 발생소지 정보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⑪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⑫ 이용자는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요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⑬ 이용자는 서비스계약에 필요한 주소, 연락처, 요금납부책임자 등의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간신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 된 불이익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⑭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 ⑮ 이용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경우 서비스 종지 또는 계약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⑯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7 장 이용고객의 권리에 관한 조치

제 37 조 (열람 및 정정 요구)

-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방문하거나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아이디(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고객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8 장 침해사고 및 스팸대응

제 38 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①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접속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 ③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 ④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제 39 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의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접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시 또는 E-Mail, 팩스, SMS)을 이용합니다.
-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 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상에서 즉각적인 분리 (연결 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또는 네트워크 주소(IP) 차단 등)
 2.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3.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
 4.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 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④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 ⑤ 회사는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 제거 및 IP 블록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고객은 한국 ISP협회(KISPA)의 소정양식에 의거 사유발생 후 1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약관 제37조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 ⑥ 회사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해 이용고객에게 부가서비스 형태로 관련 Agent 또는 Software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0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②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 41 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① 이용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42 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등)

- ① 이용고객은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시 이용고객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③ 수신자의 모사전송기기, 전자우편 등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그에 대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④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2.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⑤ 이용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과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렇게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43 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32조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제 44 조 (정보전송 역무 제공의 제한)

-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4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고객이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공 정보 및 광고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회사는 원활한 정보전송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웹,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컴퓨터에서 다양한 감염의도의 메일전송, 스팸전송 등이 발견된 경우
 2. 해당 이용고객과 관련하여 국, 내외로부터 민원 또는 위해 제보가 접수된 경우
 3. 기타 회사와 체결한 약관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정보전송이 아니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IP대역에서 메일서버 등 인터넷서버 운영)
-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은 이용고객 등 이해관계인에게 홈페이지 공시, E-Mail, 전화, 팩스, SMS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 9 장 손해배상

제 45 조 (손해배상의 범위)

-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6시간 이후의 서비스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46 조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제 47 조 (면책)

-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 ② 자유게시판 서비스의 경우 각 게시판에 게재된 데이터의 보존 책임이 없습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할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기대하는 손익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 ⑤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 ⑥ 약관의 적용은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 ⑦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에서 임대한 장비 및 단말기기 등에 낙뢰나 과전압 등의 손상에 대한 보호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 ⑧ 회사는 자유게시판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합니다.
- ⑨ 자유게시판 서비스와 같이 이용자 자신이 서비스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경우 개설한 이용자와 해당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간의 각종 법규위반 및 금지 행위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간에 있으며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 48 조 (약관의 개정 및 기타)

- ① 사업자는 결합 할인율을 변경하거나 결합상품을 폐지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해야하며, 이용자에게 우편, 이메일, 문자 등으로 개별 고지해야 합니다.
- ② 사업자 귀책사유의 결합상품의 폐지의 경우, 기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계속 제공 합니다.
- ③ 사업자는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결합할인율 변경시,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고 있는 현재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의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제 49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 1.[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3.[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4.[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 5.[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 6.[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7.[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8.[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9.[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10.[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11.[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12.[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13.[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 14.[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15.[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 16.[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 17.[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 18.[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19.[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20.[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6월 09일부터 시행합니다.
- 21.[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22.[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23.[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4.[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 25.[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26.[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27.[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28.[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 29.[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7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 30.[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31.[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2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 32.[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3.[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4.[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5.[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8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 36.[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 37.[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8.[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9.[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3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 40.[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41.[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42.[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43.[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44.[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45.[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46.[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47.[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48.[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019년 8월 1일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 이용약관 본문 제20조(해지 및 재가입) ⑯항의 3, 제31조(요금의 할인) ⑤, ⑥항
- 49.[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50.[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51.[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52.[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53.[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54.[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55.[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 표]

[별표 1] 이용료

가. 기본 이용료

- ① 개념 : 기본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② 적용기준 : 1접속회선당 1단말 기준

[단위 : 원/월, 부가세 포함]

종류	내용	요금	비고
HI- 기가프리미엄	HFC, 광케이블, xTTH, xDSL 등을 통하여 기가급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최대속도 1Gbps)	44,000원	
HI- 기가이코노미	HFC, 광케이블, xTTH, xDSL 등을 통하여 기가급(500M)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최대속도 500Mbps)	38,500원	
HI- 프리미엄	HFC, 광케이블, xTTH, xDSL 등을 통하여 고급형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최대속도 100Mbps)	33,000원	
HI- 이코노미	HFC, 광케이블, xTTH, xDSL 등을 통하여 보급형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최대속도 10Mbps)	28,600원	
서경프로	Cable 망을 이용하여 고급형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31,900원	2014년 1월 1일 부터 신규가입 제한 서비스
서경스마트	Cable 망을 이용하여 일반형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7,500원	
서경라이트	Cable 망을 이용하여 기본형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6,400원	
서경VDSL 프리미엄	xDSL 망을 이용하여 고급형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31,900원	
서경VDSL 이코노미	xDSL 망을 이용하여 고급형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7,500원	
서경프리미엄	HFC, 광케이블, xTTH, xDSL 등을 통하여 고급형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33,880원	
서경광랜이코노미	광케이블, 무선망 등과 구내 UTP 케이블을 결합하여 LAN 형태로 일반급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9,480원	
서경스피드	셋탑박스를 이용하여 일반급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37,400원	

나. 서경 전용선 이용료 및 할인(금액)율

[단위 : 원/월, 부가세 포함]

구 분	무약정	1년약정	2년약정	3년약정
3Mbps	660,000	627,000	594,000	561,000
5Mbps	770,000	731,500	693,000	654,500
10Mbps	1,100,000	1,045,000	990,000	935,000
20Mbps	1,650,000	1,567,500	1,485,000	1,402,500
30Mbps	1,870,000	1,776,500	1,683,000	1,589,500
50Mbps	2,200,000	2,090,000	1,980,000	1,870,000
할인율	-	5%	10%	15%

※ 장비사용료는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일괄 55,000원입니다.

※ 해당 요금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됩니다.

※ 전용회선서비스 이용료는 “전용회선서비스 이용약관”을 참고바랍니다.

다. 2IP 이상 사용 요금표

- ① 고정 1IP 요금은 20,000원 (VAT포함) 입니다.

구 分	기본(1IP) + 추가 IP당 요금적용 기준	비 고
일 반 용	추가 1IP 추가 2IP ~ 9IP 추가 10IP 이상	10,000원 15,000원 10,000원 ◇ 3IP 이상은 HI-프리미엄 상품 권장함
숙박업소용	추가 1IP ~ 4IP 추가 5IP ~ 9IP 추가 10IP 이상	10,000원 9,000원 8,000원 ◇ HI-프리미엄 상품 이상 신청 가능 ◇ 5IP 이상 기본사용

[별표 2] 설치비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가정용 서비스 (아파트, 단독, 공동주택)	사무용 서비스 (빌딩, 오피스텔, 상가)	비 고
가입설치비	44,000		
이전설치비	16,500		
댁내이전비	11,000		
재가입비	11,000		
가입설치비	11,000		AP 장비

- ①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 또는 직권해지를 한 경우 설치비는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 ② 현장 실사 후 설치환경이 특수한 경우는 설치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③ LAN카드 미보유시 회사가 무상 제공합니다.
- ④ 재가입의 경우 미납금 전액 납부 시 재가입비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⑤ 2대 이상 설치 시 소요되는 HUB는 가입자 부담입니다.
- ⑥ Hi-WiFi AP 설치비의 경우, 당사 인터넷과 동시설치 시 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설치비를 면제받은 고객이 1년이내 해지시 면제받은 설치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출동비 (고객 소유 장비 장애 관련)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分	비 용	비 고
출동비	11,000원/건	고객 사유에 의한 AS 출동 요청 시

- ① 이용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장비(서비스) 외 고객 소유 장비로 인한 고장(장애) 등, 고객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AS 출동 요청 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 ② 청구 기준 및 대상

구 分	기준 및 대상
컴퓨터 (태블릿, 패드 포함)	컴퓨터 부팅 불가, 전원이 들어오나 화면이 나오지 않음, 컴퓨터 주변기기(프린터, 키보드, 마우스, 랜카드 등)불량 등의 고객 소유 단말이상으로 인한 출동 시
TV(텔레비전)	전원이 들어오나 화면이 나오지 않음, TV전원이 켜지지 않음, 가전사TV 설치 후 HDMI 연결 요청
기타	각종 IoT기기, 리모컨 배터리, 전원선 미연결, 당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외부기기(음향장비), 사설공유기 자체의 문제로 인한 출동 시, 타시서비스인 경우

[별표 3] 부가서비스

[부가세 포함]

서비스종류	내용	요금
유해사이트 접속차단서비스 (서경맘아이)	고객의 신청에 따라 음란, 폭력, 자살, 도박등 청소년에 유해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초고속 통신망상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서비스	3,300원/월 (모뎀당, ID당)
유해차단서비스 (서경아이케어)	비교육적인 음란, 도박, 폭력, 자살등에 관한 인터넷 유해정보 사이트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서비스	3,300원/월
케이블닥터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검색, 치료 PC 청소, 원격 PC 점검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무료

※ 부가서비스에 관한 제공 방법 및 기준, 이용절차 등에 관해서는 제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합니다.

※ 서경맘아이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는 서비스 적응 기간인 가입 1개월차 요금을 감면합니다.

※ 서경 엑스키퍼서비스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을 제한합니다.

[별표 4] 장비 사용료

가. 모뎀 사용료

[단위 : 원/월, 부가세 포함]

구 분	4년약정	3년약정	2년약정	1년약정	무약정
케이블 모뎀	1,100	2,200	3,300	4,400	8,800
VDSL 모뎀	1,100	2,200	3,300	4,400	8,800
FTTH 모뎀	1,100	2,200	3,300	4,400	8,800
할 인 액	7,700	6,600	5,500	4,400	-

- ①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만기경과 고객에 대하여는 장비사용료가 면제됩니다.
- ② 약정만기 해지자가 재가입시는 장비사용료가 면제됩니다.
- ③ 동일명의 가입자가 모뎀을 2개 이상 사용 시 추가되는 1대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 ④ 2014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약정고객은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 이내 해지 시, [별표 8] 위약금 및 변상금 규정에 준하여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나. Hi-WiFi AP 사용료

[단위 : 원/월, 부가세 포함]

구 분	4년약정	3년약정	2년약정	1년약정	무약정
Hi-WiFi AP	1,100	1,650	2,200	4,400	8,800
할 인 액	7,700	7,150	6,600	4,400	-

- ① 본 상품은 당사 인터넷 사용고객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② 본 상품의 할인액 반환금이나 변상금의 경우 [별표 8] 위약금 및 변상금 규정에 준합니다.
- ③ 판매처리한 AP의 경우 1년간 장비교체를 무상으로 처리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장비교체의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sub-network) 무단 부착에 대한 위약금

- ① 고객이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약정한 단말수 이상을 연결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 산정식 : 약정 이외의 단말수 \times 최근 6개월 평균 이용요금 \times 3
- 고객이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기간의 평균요금 적용.

[별표 5] 요금할인

가. 약정 할인

대상상품	내용	요금	할인율				
			약정기간	1년	2년	3년	4년
HI- 기가프리미엄	이용고객이 약정기간을						
HI- 기가이코노미	회사와 사전계약하고	무약정					
HI-프리미엄	계약기간 동안 소정의	기본이용료					
HI-이코노미	요금을 할인		할인율	10%	20%	30%	40%

나. 결합 할인

대상상품	내용	결합유형	할인율 (기본이용료)	
			인터넷 +아날로그	인터넷 + 디지털
HI- 기가프리미엄	동일 이용고객이 동일 설치지역에서		약정별 기본이용료에 20% 할인	
HI- 기가이코노미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방송서비스를			
HI-프리미엄	동시에 사용한 것에 따른 요금할인.			
HI-이코노미			약정별 기본이용료에 30% 할인	

* 결합할인 적용 중 일부 상품을 해지할 경우, 남은 잔여 상품은 단독상품 요금으로 환원됩니다.

* 방송서비스의 결합할인 적용 대상 상품은 아날로그 방송 의무형 및 디지털 복지형 상품을 제외한 아날로그 디지털 방송 상품에 적용되며, 각 방송 요금은 방송 서비스 약관, 인터넷전화 요금은 인터넷전화 이용약관에 적용 받습니다.

* 결합 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신규고객 및 상품 변경고객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 장기계약 및 재약정자 이용료 감면

적 용 대 상	대 상 요 금	약정기간	비 고
1년이상 장기계약 고객	기본 이용료 (감면율:100%)	1년약정	개통 후 2개월째
		2년약정	개통 후 2, 13개월째
		3년약정	개통 후 2, 13, 25개월째
		4년약정	개통 후 2, 13, 25, 37개월째
약정만기자중 재약정자 (기본 이용료 면제 혜택, 할인혜택 종 택1)	기본이용료 (감면율:100%)	1년약정	개통 후 2개월째
		2년약정	개통 후 2, 13개월째
		3년약정	개통 후 2, 13, 25개월째
		4년약정	개통 후 2, 13, 25, 37개월째
기본이용료 (할인율 감면)	기본이용료 (할인율 감면)	1년약정	기본이용료의 2% 추가할인
		2년약정	기본이용료의 4% 추가할인
		3년약정	기본이용료의 7% 추가할인
		4년약정	기본이용료의 8% 추가할인

[재약정 계약 가입자 추가혜택]

적용 대상	대상 요금	약정기간	비고
2019년도 1월 31일 이전 재약정 가입자 or 재재약정 가입자	기본이용료 (할인율 감면)	-	3% or 5% (※ 2019년 2월 1일 이후부터 중단)
2019년도 2월 1일 이후 재약정 가입자	기본이용료 (할인율 감면)	1년약정 2년약정 3년약정 4년약정	기본이용료의 4,950원 추가할인 기본이용료의 4,400원 추가할인 기본이용료의 3,850원 추가할인 기본이용료의 3,300원 추가할인

- ① 회사는 신규가입자 또는 약정만기 재약정 가입자에 대하여 기본 이용료 면제혜택, 기본 이용료 할인 혜택 및 사은품 증 택1 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중복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약정 상품 지급안함)
(※ 가입 후 1년 이내 해지 시 해당 사은품을 환수 또는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의 구체시유에 의한 민원 발생시 기본 이용료를 최대 3개월 면제 또는 사은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IP추가 시 추가이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④ 모뎀추가 시 모뎀 1대에 한하여만 적용됩니다.
- ⑤ 요금감면 및 다른 요금할인(자동이체)과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 ⑥ 재약정 기간 이내 종도 해지시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할인반환금 산정식 : '약정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 약정별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 : [별표 8 참조]
- ⑦ [재약정 계약 가입자 추가혜택]의 경우, 결합할인과는 중복 적용되나 복수할인 및 요금감면, 다이렉트할인 등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 공동청약 할인

적용대상	적용 기준	적용 방법										
공동청약 할인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다량으로 신청하거나, 동일 지역 (건물)별로 다량으로 청약시 요금할인 → 대상할인 요금 : 기본이용료 ※ 가. 약정 할인, 나. 결합할인, 및 별표 6 요금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입자 수</th> <th>할인율</th> </tr> </thead> <tbody> <tr> <td>10 ~ 30</td> <td>5%</td> </tr> <tr> <td>31 ~ 100</td> <td>10%</td> </tr> <tr> <td>101 ~ 500</td> <td>15%</td> </tr> <tr> <td>501 ~ 700</td> <td>20%</td> </tr> </tbody> </table>	가입자 수	할인율	10 ~ 30	5%	31 ~ 100	10%	101 ~ 500	15%	501 ~ 700	20%
가입자 수	할인율											
10 ~ 30	5%											
31 ~ 100	10%											
101 ~ 500	15%											
501 ~ 700	20%											

* 단, 2010년 2월부터 신규 가입하는 다량신청 고객부터 적용

마. 아카데미 할인

대상상품	내용	요금	할인율
HI- 기가프리미엄			
HI- 기가이코노미	당사 사업구역 내 대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 대상 인터넷할인.	기본 이용료 (무약정/ 1년약정) 에 한함.	50% 할인
HI-프리미엄			
HI-이코노미			

- ※ 적용대상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입학증명서)를 증빙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 다른 요금과 중복감면 (복지할인 등) 불가. 단,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 방송과 동시 가입시 결합 할인율 적용 가능합니다.
- ※ 무약정 상품 가입 시 이용료 면제 또는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증빙서를 근거로 하여 출업시점(가입일 이후 최대 4년)이 도래하였을 시 해당 가입 상품의 기본 이용료로 자동 전환됩니다. 자동 전환 전후에 고객의 선택에 의해서도 요금상품 및 약정기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 ※ 자동 전환 이후 시점에서도 대학교 재학 중일 경우, 재학증명서를 증빙서로 제출하면 할인 적용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 제한>

적용 대상	서비스명	설치비	월이용료		할인율	비고		
			기본이용료	모뎀임대료				
대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에 한함	서경스마트	면제	19,250	면제	30%	무약정		
	콤보스마트		21,560					
	서경광랜이코노미	면제	20,636	-				
	콤보광랜이코노미		22,946					
대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에 한함	서경스마트	면제	17,710	면제	30%	1년 약정		
	콤보스마트		20,020					
	서경광랜이코노미	면제	19,096	-				
	콤보광랜이코노미		21,406					

바. 디렉트 할인

대상상품	내용	요금	할인금액
HI- 기가프리미엄			
HI- 기가이코노미	회사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3년이상 약정 조건으로 신규 가입할 때 제공되는 할인	기본 이용료	월 3,300원
HI-프리미엄			
HI-이코노미			

- ※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한 신규 가입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기존 이용고객 대상 요금할인 적용은 불가합니다.
- ※ 디렉트 요금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에게는 “[별표 6] 요금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약정기간 내 해지하거나 약정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제20조 제6항으로 각 호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면제합니다.
- 산정식 : 할인금액 x 사용개월 수.

사. 개통 지연 요금 할인

- ① 개념 : 당사의 구독자유로 고객이 요청한 개통예정일로부터 실 개통일까지 15일 이상 설치지연된 경우 1회에 한하여 할인 적용
- ② 개통예정일 기준 : 고객이 인터넷서비스를 신청한 후 설치공사를 요구한 설치희망일
- ③ 적용시기 및 할인율 : 가입 후 최초 청구된 기본이용료의 30% 적용

아. 기타 요금 할인

할인종류	적용기준	적용방법
E-mail요금 청구시	이-메일로 요금고지서 청구시 적용	월이용료 100원 감액
정기계약 요금할인	고객이 이용기간을 회사와 사전계약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계약기간동안 요금할인	약정기간별 차등적용

자. 복수할인

대상상품	내용	대상요금	할인금액
HI- 기가프리미엄	동일 이용고객이 동일 설치 지역에서		약정금액
HI- 기가이코노미	동일 서비스를 2대 이상 이용시		50%할인
HI-프리미엄	최초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에		장비사용료
HI-이코노미	대하여 요금 할인		면제

* 가입대상 : 모회선과 동일 명의 가입자(생년월일 및 성명 일치)

* [별표 5] 나, 라, 마, 바, 카 항목과, “[별표 6] 요금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모회선의 경우 [별표 5] 나, 라, 마, 바, 카 항목과 “[별표 6] 요금감면” 규정에 따릅니다.

* 모회선이 해지되거나, 추가대수 중 명의 변경한 건에 대해서는 복수 할인이 중단 됩니다.

* 추가회선 가입 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 제공 받은 요금할인에 대한 할인 반환금이 부과 됩니다.

- 할인반환금 산정식 : 총할인액 x (1-사용기간할인율/약정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적용 : 1년 미만시 무약정, 2년 미만시 1년약정, 3년 미만시 2년약정, 4년 미만시 3년약정으로 적용한다.

차. 프로모션 할인

할인제도	내용	기간
2015년 신학기 프로모션	<p>※ 대상자 : 프로모션 행사기간 중 신규로 가입한 아카데미 할인가입자</p> <p>※ 할인내용 : 이용료 1개월 무료.</p> <p>※ 2015년 2월 16일 이후 아카데미 신규 가입자의 경우 이용료 1개월 무료를 소급하여 적용합니다.</p> <p>- 할인 반환금 산정식 : 면제개월수 X 약정기간 요금.</p>	15.03.09~ 15.03.15
설치비 할인 프로모션	<p>※ 대상자 : 프로모션 행사기간 중 신규로 가입한 고객</p> <p>※ 할인내용 : 설치비 11,000원 할인 제공</p> <p>※ 설치비를 면제받은 고객이 1년이내 해지 시 [별표8] 위약금 및 변상금 내용에 따라 면제된 가입설치비를 반환하여야 하며, 프로모션 11,000원 추가할인에 대한 할인반환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p>	23.07.01~ 23.06.30

카. 소상공인 할인

대상상품	내용	대상요금	할인금액
HI- 기가프리미엄 HI- 기가이코노미	※ 대상자 : 당사 사업구역 내 소상공인 중 HI- 기가이코노미, HI- 기가프리미엄 인터 넷 사용 고객 대상	기본 이용료	약정금액 50%할인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신청(신고)서 중 1부.

* [별표 5] 나, 다, 라, 마, 바 항목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약정 상품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약정 기간 이내 중도 해지 시 또는 약정 기간을 단축 할 경우에는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할인반환금 산정식 : ‘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 약정별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 : [별표 8 참조]

* 소상공인 할인의 경우 이용료 면제 또는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HI-WiFi AP상품은 별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상품만 소상공인 할인이 적용됩니다.

* 방송, 인터넷전화 등 타 상품과 결합 시 소상공인 할인과 결합할인 중 더 큰 할인 1가지만 적용됩니다.

[별표 6] 요금 감면

대상	적용기준	감면율 (기본이용료)	증빙서류
자연인	심신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30%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에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하여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및 직계가족 1인(단, 유족증 소지자에 한함)	30%
	저소득층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호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및 직계가족 1인	30%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에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순국선열 및 독립유공자 및 유족	30%
	광주 민주화 상이자	광주민주유공자에 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30%
	3자녀 가정	주민등록상 20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두고 부모 및 직계자녀 명의로 신청한 회선(단, 가정용에 한함)	30%
	참전용사	참전유공자에 우에 관한 법률 제4658호에 근거하여 보훈청으로부터 참전 용사증을 발급받은 참전용사	30%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복지시설 및 단체	30%
	초·중고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초·중고등교육법에서 지정한 특수학교	30%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서 지정한 아동복지시설	30%
	국가유공자단체 등	국가유공자 등에 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에 속한 단체	30%

- ①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최고 감면을 대상 1항목만 적용합니다.
- ② 1인 1회선에 한하여 감면 적용합니다.
- ③ 2014년 1월 1일 신규가입 고객부터 요금감면고객은 타 할인요금과 종복적용 불가합니다.
- ④ 유료정보서비스 이용료 및 유료부가서비스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⑤ 사무용서비스, 특수사무용서비스(PC방), 교육용서비스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⑥ 회사의 관계인 및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기본 이용료의 30% ~ 50%까지 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단,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 자녀대상 인터넷 무료 지원사업의 경우 월 이용료를 교육청에서 일괄 입금하는 조건으로 최대 15%까지(모뎀임대료 면제) 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는 회사 및 관계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이용료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5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영업점에 대하여는 무료로 인터넷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⑧ 단, 성년 등 기타 변동 사항으로 주민등록상 20세 미만인 직계자녀수가 3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요금 할인이 종료됩니다.

[별표 7] 초고속인터넷 최저속도 보장 제도

- ① 대상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 ② 최저속도 (하향속도 기준)

구분	HI-이코노미	HI-프리미엄	HI- 기가이코노미	HI- 기가프리미엄
최저속도	1 Mbps	10 Mbps	75 Mbps	150 Mbps
최대속도	10 Mbps	100 Mbps	500 Mbps	1 Gbps

※ 기존 프로, 스마트, 스피드, 이코노미, 프리미엄 상품의 최저속도는 1Mbps입니다.

※ 유동 IP 부가서비스 등 복수 단말 상품은 제외합니다.

- ③ 최저속도 보장구간

회사 시설 구간(속도 측정서버에서 회사와 고객 층 시설 분계점까지)

- ④ 측정기준 : 서경방송 속도측정 서버(<http://speed.iscs.co.kr>) 이용

- ⑤ 보상정책

1. 보상기준 : 30분동안 5회 이상 측정, 60%이상 최저속도에 미달한 경우 보상

2. 보상금액 : 기본 이용료의 1일 이용료(할인율이 적용된 요금)를 감면

- ⑥ 예외 조항

1. 건물의 구내 배선으로 인한 속도 저하일 경우

2. 고객의 PC상의 Hardware 및 Software 문제로 인해 최저 속도에 미달 시

3. 고객이 회사가 아닌 타 구매처를 이용 구매한 케이블 모뎀의 문제로 인하여 최저속도 미달시

[별표 8] 위약금 및 변상금

가. 할인액반환금의 정의

이용고객이 사용기간을 사전 약정하고 기본이용료, 장치임대료, 설치비 등에 대해서 할인 또는 면제를 받던 중 약정기간 만료 전에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지하거나, 약정기간을 단축시 할인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할인액반환금이라고 한다. 단, 설치비는 이용고객이 1년 이전에 해지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나. 할인액 반환금 종류 및 산정식

① 해지 할인액 반환금 산정식

종류	산정식	비고
2016년 12월31일 이전가입자	기본이용료 (사용기간 이용요금- 약정기간 이용요금) × 이용개월수	
	장치임대료 (사용기간 임대료- 약정기간 임대료) × 이용개월수	
2017년 1월1일 이후가입자	기본이용료 '약정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 의 월 누적금액	
	장치임대료 '약정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 의 월 누적금액	
설치비	면제된 가입설치비 (단, 1년이상 사용시 면제)	가입 후 1년
경품(사은품)	경품(사은품)위약금/약정기간X(약정기간-경과월수)	이내 해지 시
이용 요금 면제 반환금	(실 면제개월수 - 사용기간 면제 개월 수) X 약정이용요금 * 사용기간 할인율 적용 : 1년 미만시 무약정 실면제개월수, 2년 미만시 1년약정 실면제개월수, 3년 미만시 2년약정 실면제개월수, 4년 미만시 3년약정 실면제개월수로 적용한다.	
재계약 후 중도해지	사용기간 월 이용료 X 재약정 이용개월수 X (재약정기간 할인율-이용기간 할인율)	
결합상품의 일부 서비스 해지시 위약금	이용개월수 x 결합 할인액 → 일부서비스 해지시 위약금은 기존 결합상품으로 부터의 혜택과 일부 서비스 해지후 변경 결합상품간의 혜택차이로 산정.	
약정기간 단축	(변경후 약정이용료-최초약정이용료) × 사용개월 수 × (1- 사용개월 전월수/100)	임대료 반환금과 동일함

※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

① 1년 약정

사용기간(개월)	1~6	7~9	10~12
부과율(%)	100	80	-20

② 2년 약정

사용기간(개월)	1~6	7~12	13~15	16~18	19~21	22~24
부과율(%)	100	40	20	-50	-80	-100

③ 3년 약정

사용기간(개월)	1~6	7~12	13~18	19~24	25~30	31~36
부과율(%)	100	60	30	-20	-50	-80

④ 4년 약정

사용기간(개월)	1~6	7~12	13~18	19~24	25~28	29~32
부과율(%)	100	60	40	20	0	-5
사용기간(개월)	33~35	36~38	39~41	42~43	44~45	46~48
부과율(%)	-20	-40	-70	-100	-140	-160

※ 약정이용 기간별 할인 반환금 부과율 기준 (2017년 1월1일 이후 가입자적용)

예시) 3년 약정 기준 28개월 사용시

$$(6개월 \times 할인금액 \times 100\%) + (6개월 \times 할인금액 \times 60\%) + (6개월 \times 할인금액 \times 30\%) + \\ (6개월 \times 할인금액 \times 20\%) + (4개월 \times 할인금액 \times 50\%)$$

※ 사용기간 산정(16년12월31일이전가입자): 1년 미만, 무약정, 2년미만은 1년약정, 3년미만은 2년약정, 4년미만은 3년약정으로 적용합니다.

※ 이용개월수를 계산함에 있어 30일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30일로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 재 약정기간 만료 후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약정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자동 연장기간 종 이용요금은 재 약정기간 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자동연장 후 종도 해지시 할인액 반환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 할인액반환금 100% 및 50% 감면 대상

구분	면제사유		구비서류
할인반환금 100%감면	가입자 군입대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등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입영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입영일자/결과조회(병무청사이트에서 이용가능) 서류 중 택1
	서비스제공 불가능지역 이전	개인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단, 미전입시 : 전월세계약서+이전 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가입자 사망		사망확인서류 또는 호적등본, 가족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
할인반환금 50%감면	해외이민		해외 이민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 상에 신고인이 아닌 동반자로 되어 있을 시, 가족관계증빙서류 필수, 외교통상부 장관(인) 필수
	건물주 반대	일반고객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단, 미전입시 : 전월세계약서+이전 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 가입자명의 서류여야 함
		사업자	주소가 나와 있는 사업자등록증(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주소/소재지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경우 하단에 날짜로 확인)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단, 미전입 시 : 전월세계약서+이전 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할인반환금 면제(100%)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22년 4월 1일 이후 이전 설치 요청 건에 대한 해당사항) ※ 가입자명의 서류여야 함
	이전 설치 요청 시 특정 사업자 1개만 서비스 이용 가능		

※ 구비서류 번조 등 부적절한 서류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감면한 할인반환금을 재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건물주 반대 사유로 설치불가 확인된 고객에 한해 구비서류 접수 후 감면 적용합니다.

※ 이용약관 본문 제31조 ⑤항의 이용료 할인대상

구비서류	비고
- 이전사업자를 통해 발행된 할인반환금 납부확인서(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가 “할인반환금 납부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및 검증 한 이후 적용 이전사업자를 통해 발행된 할인반환금 납부확인서 중 사업자에 신규로 가입한 서비스에 한하여 “이용자 납부액”에 이를 때 까지 매월 이용료(부가사용료 제외)에서 할인

라. 장비 변상금 및 A/S 수리비

1. 변상금 산정식

종류		산정식
2017년 5월 31일 이전가입자	장비 변상금 (모뎀, AP 판매가격)	(60개월-사용월수*)/60개월 X 장비가격 *사용월수 : 현 단말 이용자에게 개통되어 사용된 기간
2017년 6월1일 이후가입자	장비 변상금 (모뎀, AP 판매가격)	(60개월-해당 단말의 사용월수**)/60개월 X 장비가격 **해당 단말의 사용월수 : 단말이 실제 개통되어 사용된 기간
		- 장비가격은 분실, 훼손 당시의 시가를 의미하며, 시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동일 규격 모뎀(또는 AP)가격입니다. - 사용월수는 6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개월로 계산합니다. - 사용월수는 15일에서 반올림합니다.

2. A/S수리비 :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장비 손상시에는 회사가 정한 A/S 규정에 따라 수리하며, 그 비용을 이용고객에게 유상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장비 수리 시 발생한 실비로 합니다.

[별표 9] 영상알림 서비스(하이뷰)

(“2019. 5. 20 이후 상품 판매 중단”)

1. 정의 : 인터넷 부가서비스로 초고속인터넷 화선과 유/무선 인터넷 카메라를 이용하여, 모니터 장소의 특정 상황을 핸드폰(또는 웹)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2. 대상 : 시경방송 서비스 이용 고객

3. 가능 :

- 1) 고객이 설치한 카메라로 이상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화면을 촬영 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제공
- 2) 휴대폰 정자 영상 제공
- 3) 웹 영상 제공

※ 휴대폰 실시간 영상은 본인이 직접 이통사로 서비스 신청해야 하며, 서비스 요금도 본인이 이통사에 부담.

실시간 모바일 영상 서비스 : www. mylive.co.kr

4. 요금

[단위 : 원/월, VAT포함]

4-1. 단독 상품 요금

브랜드명	약정기간	이용료	카메라사용료	모뎀사용료	합계	비고
하이뷰 (단독)	무약정	33,000	13,200	8,800	55,000	카메라 사용료는 1대당 가격.
	1년	22,000	11,000	4,400	37,400	
	2년	16,500	6,600	3,300	26,400	
	3년	11,000	4,400	2,200	17,600	
	4년	8,800	3,300	1,100	13,200	

* 카메라 추가 설치 시 이용료만 50% 할인 적용. 카메라 사용료는 정상징구

4.2. 서비스 이용 유형별 적용 요금

1) (디자털 또는 인터넷전화) 가입자의 하이뷰 요금.

브랜드명	약정기간	이용료	카메라사용료	모뎀사용료	합계	비고
하이뷰+	무약정	24,200	13,200	8,800	46,200	DPS 기업자 이용료 50% 할인 단, 1,100원 미만 반율림 적용.
	1년	16,500	11,000	4,400	31,900	
	2년	12,100	6,600	3,300	22,000	
	3년	8,800	4,400	2,200	15,400	
	4년	6,600	3,300	1,100	11,000	

2) 인터넷 가입자의 하이뷰 요금

브랜드명	약정기간	이용료	카메라사용료	모뎀사용료	합계	비고
인터넷	무약정	16,500	13,200	0	29,700	인터넷 가입자 이용료 50% 할인 단, 1,100원 미만 반율림 적용.
	1년	11,000	11,000	0	22,000	
	2년	8,800	6,600	0	15,400	
	3년	5,500	4,400	0	9,900	
	4년	4,400	3,300	0	7,700	

3) 결합상품 가입자의 하이뷰 요금

브랜드명	약정기간	이용료	카메라임대료	모뎀임대료	합계	비고
하이뷰+	무약정	15,400	13,200	0	28,600	DPS 이상
	1년	9,900	11,000	0	20,900	
	2년	6,600	6,600	0	13,200	
	3년	4,400	4,400	0	8,800	
	4년	3,300	3,300	0	6,600	

5. 설치비

[단위 : 원/월, VAT 포함]

구 분	작업유형	설치비	비 고
신 규 설 치 바	단일	44,000	인터넷과 동시 가입 시 설치비 면제.
이전 및 추가	단일	16,500	
댁 내 이 전 바	단일	11,000	
재 가 입 바	단일	11,000	

6. 할인 반환금 및 손실변상금

* 별표 8. 위약금 및 변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함.

7. 단말기 설치 및 이용

- 서비스를 위해 제공되는 장비는 고객 동의하에 원하는 장소에 설치됨으로, 철거 시 인테리어 등 주위 환경을 설치 이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상 복구와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본인이 직접 이동통신사로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요금(모바일영상서비스료)은 본인이 이통사로 부담해야 합니다.
- 회사는 최초 제공된 영상 자료에 대하여는 제공 후 일체 관리하지 않으며, 해당 자료에 대하여 고객이 재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인증번호를 이용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확인 가능한 자료는 최초 제공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자료에 한합니다.

8. 면책사항

- 서비스는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고객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로서, 특정 상황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발생 후 상황을 해결 하자는 못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특정 상황 자체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피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2) 서비스를 위해 제공되는 리모콘은 고객 스스로 원하는 모드를 설정해야하며, 설정 상의 오작동으로 인해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신 등이 안 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서비스를 위해 제공되는 장비는 고객 동의하에 원하는 장소에 설치됨으로, 철거 시 인테리어 등 주위 환경을 설치 이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상 복구와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9. 이용증자
- 1) 회사는 이용 고객이 부당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 이용자의 의무
-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임대된 모든 장비(카메라, 공유기 등)는 서경방송의 자산이므로 서경 방송의 동의 없이 설치된 장비를 변경, 무단연결, 훼손, 분해, 철거할 수 없으며, 특히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임대된 모든 장비(카메라, 공유기 등)는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회사에 반납하여야하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 손실변상금이 부과됩니다.

< 2014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 제한 서비스 >

1. 단일상품

(1) 인터넷 단일상품

구분	케이블 모뎀				VDSL		
	서경프로	서경스마트	서경라이트	할인액	서경VDSL프리미엄	서경VDSL이코노미	할인액
4년	25,300	20,900		6,600	25,300	20,900	6,600
3년	26,400	22,000	20,900	5,500	26,400	22,000	5,500
2년	27,500	23,100	22,000	4,400	27,500	23,100	4,400
1년	29,700	25,300	24,200	2,200	29,700	25,300	2,200
무약정	31,900	27,500	26,400	-	31,900	27,500	-

구분	광랜			단독 100M (와이드밴드)		셋탑+인터넷	
	서경광랜프리미엄	서경광랜이코노미	할인액	서경프리미엄	할인액	서경스피드	할인액
4년	26,290	21,890	7,590	26,290	7,590	23,100	14,300
3년	28,380	23,980	5,500	28,380	5,500	25,300	12,100
2년	29,480	25,080	4,400	29,480	4,400	27,500	9,900
1년	31,680	27,280	2,200	31,680	2,200	30,800	6,600
무약정	33,880	29,480	-	33,880	-	37,400	-

* 셋탑+인터넷방식의 서경스피드 상품은 디지털 셋탑박스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함으로 인터넷 모뎀 사용료가 없으며, 단독으로도 판매 가능합니다.

(2) 아날로그 방송 단일상품

구분	의무형		가족형	
	요금	4,400원 이하	할인액	7,700원 이하

(3) 디지털 방송 단일 상품

구분	경제형		고급형	
	이용료	할인액	이용료	할인액
4년	9,900	7,700	14,300	7,700
3년	11,000	6,600	15,400	6,600
2년	13,200	4,400	17,600	4,400
1년	15,400	2,200	19,800	2,200
무약정	17,600	-	22,000	-

(4) 인터넷전화 단일상품

구분	내역		기본료	할인액	할인율
	단독가입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단독 가입의 경우			
단독가입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단독 가입의 경우	월 4,400원	0	0	-

2. 결합상품

(1) 케이블 모뎀

(3) 광랜 / 단독 100M

구분		무약정	1년약정	2년약정	3년약정	4년약정	비고
아날로그 DPS (콤보)	콤보광랜 프리미엄 (콤보프리미엄)	31,680	29,480	27,280	26,180	24,090	단독 100M 동일
	방송 기족형	5,500	5,500	5,500	5,500	5,500	1,100원 정액 할인
	계	37,180	34,980	32,780	31,680	29,590	
	콤보광랜 이코노미	27,280	25,080	22,880	21,780	19,690	
	방송 기족형	5,500	5,500	5,500	5,500	5,500	1,100원 정액 할인
	계	32,780	30,580	28,380	27,280	25,190	
디지털 DPS (디콤보)	디콤보광랜 프리미엄 (콤보프리미엄)	31,680	29,480	27,280	26,180	24,090	단독 100M 동일
	방송 경제형	15,400	13,200	11,000	8,800	7,700	
	고급형	19,800	17,600	15,400	13,200	12,100	
	계 경제형	47,080	42,680	38,280	34,980	31,790	
	계 고급형	51,480	47,080	42,680	39,380	36,190	
	디콤보광랜 이코노미	27,280	25,080	22,880	21,780	19,690	
	방송 경제형	15,400	13,200	11,000	8,800	7,700	
	고급형	19,800	17,600	15,400	13,200	12,100	
	계 경제형	42,680	38,280	33,880	30,580	27,390	
	계 고급형	47,080	42,680	38,280	34,980	31,790	
인터넷 전화 DPS	광랜프리미엄 (프리미엄)	33,880	31,680	29,480	28,380	26,290	단독 100M 동일
	광랜이코노미	29,480	27,280	25,080	23,980	21,890	
	전화 (기본료)	2,200	2,200	2,200	2,200	2,200	기본료 50% 할인
	계	36,080	33,880	31,680	30,580	28,490	단독 100M 동일
	광랜프리미엄	31,680	29,480	27,280	26,180	24,090	
	광랜이코노미	31,680	29,480	27,280	26,180	24,090	
아날로그 TPS (콤보셋트)	콤보광랜 프리미엄 (콤보프리미엄)	31,680	29,480	27,280	26,180	24,090	단독 100M 동일
	방송 기족형	5,500	5,500	5,500	5,500	5,500	1,100원 정액 할인
	전화 (기본료)	2,200	2,200	2,200	2,200	2,200	기본료 50% 할인
	계	39,380	37,180	34,980	33,880	31,790	
	콤보광랜 이코노미	27,280	25,080	22,880	21,780	19,690	
	방송 기족형	5,500	5,500	5,500	5,500	5,500	1,100원 정액 할인
디지털 TPS (디콤보셋트)	전화 (기본료)	2,200	2,200	2,200	2,200	2,200	기본료 50% 할인
	계	34,980	32,780	30,580	29,480	27,390	
	디콤보광랜 프리미엄 (콤보프리미엄)	31,680	29,480	27,280	26,180	24,090	단독 100M 동일
	방송 경제형	15,400	13,200	11,000	8,800	7,700	
	고급형	19,800	17,600	15,400	13,200	12,100	
	전화 (기본료)	2,200	2,200	2,200	2,200	2,200	기본료 50% 할인
	계 경제형	49,280	44,880	40,480	37,180	33,990	
	계 고급형	51,480	49,280	44,880	41,580	38,390	
	디콤보광랜 이코노미	27,280	25,080	22,880	21,780	19,690	
	방송 경제형	15,400	13,200	11,000	8,800	7,700	
	고급형	19,800	17,600	15,400	13,200	12,100	
	전화 (기본료)	2,200	2,200	2,200	2,200	2,200	기본료 50% 할인
	계 경제형	44,880	40,480	36,080	32,780	29,590	
	계 고급형	49,280	44,880	40,480	37,180	33,990	

(4) 셋탑 + 인터넷

구분		무약정 (5%)	1년약정 (10%)	2년약정 (15%)	3년약정 (20%)	4년약정 (30%)	비고
디지털 DPS (디콤보)	디콤보 스피드	35,530	27,720	23,375	20,240	16,170	
	방송 경제형	16,720	13,860	11,220	8,800	6,930	
	고급형	20,900	17,820	14,960	12,320	10,010	
	계 경제형	52,250	41,580	34,595	29,040	23,100	
	계 고급형	56,430	45,540	38,335	32,560	26,180	
	디콤보 스피드	35,530	27,720	23,375	20,240	16,170	
디지털 TPS (디콤보 셋트)	방송 경제형	16,720	13,860	11,220	8,800	6,930	약정 별 차등할인
	고급형	20,900	17,820	14,960	12,320	10,010	
	전화 (기본료)	2,200	2,200	2,200	2,200	2,200	기본료 50% 할인
	계 경제형	54,450	43,780	36,795	31,240	25,300	
	계 고급형	58,630	47,740	40,535	34,760	28,380	
	디콤보 스피드	35,530	27,720	23,375	20,240	16,170	

※ 아날로그 케이블TV요금은 수신료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케이블TV 단체 공동과금 적용세대는 방송결합시 방송요금을 인터넷 요금에서 할인 적용)

※ 고객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다른 상품으로의 변경 요청 하는 경우 상품변경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신규가입 한 것으로 한다.

※ 동일 번지내 디콤보 상품 추가 가입시 복수 가입 할인율에 의해 디지털 방송만 할인 적용함.

※ 결합할인과 복지할인 등 보편적서비스는 중복적용하지 않음.